

대전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19나11631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19나116311 판결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. 10. 1 선고 2019가단11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연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

변론 종결2020. 6. 30.

판결 선고2020. 8. 18.

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. 10. 1. 선고 2019가단11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(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이태영

판사김선용

판사이경희